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.

발 의 자 : 박홍배 · 한준호 · 황명선  
윤준병 · 박해철 · 이수진  
박 정 · 이주희 · 강준현  
민병덕 · 정준호 · 김문수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·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임.

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고,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정책 역시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,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 대한 조합원 참여를 강화하며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근로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뿐 아니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함(안 제32조).
- 나.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,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을 의무화하여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함(안 제35조제3항 및 제6항).
- 다. 주식 모집·매출 또는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함(안 제38조).
- 라.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, 신고·조사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권 보호를 강화함(안 제46조의2 신설).
- 마.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·공개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정책 수립의 객관성을 높임(안 제49조의3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68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

##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32조에 따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, 우리사주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4의3.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주 권리 행사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

제32조 중 “노사협력 증진”을 “노사협력 증진 및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3항 단서 중 “제2항제1호”를 “제2항제1호 및 제4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둘 수 있다”를 “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위원의 수는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.

6.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

7.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활동 현황

제38조제1항 중 “100분의 2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00분의 2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한다.

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2(주주권 행사의 보호)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정당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 행위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3장제1절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3(우리사주제도운영 실태조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항목·방법,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9조제1항 중 “제69조(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를 “제46조의2제4항, 제69조(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, “사용자”를 “사용자,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우리사주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운영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









<신 설>

제99조(과태료) ① 제69조(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,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~ ⑤ (생략)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49조의3(우리사주제도운영 실태조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항목·방법,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9조(과태료) ① 제46조의2제4항, 제69조(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-----

-----사용자,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,-----

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